

# 물품구매규정

(제정 2000. 3. 2.)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23. 7. 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란 물품구매 계약, 물품제조 계약, 단가 계약 등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원자재, 제작품, 가공품, 소모품, 도서, 차량 등 내·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인쇄물 제작, 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비기성품의 제작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란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란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6. “자체 구매”란 구매 부서를 통하지 않고 수요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 처, 실(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등의 모든 물품구매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부서)** 물품구매 업무는 총무지원실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부서에서 자체 구매를 할 수 있으며, 구매 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단가계약이 체결된 비자산성 물품
2. 추정가격이 300만원 이하의 비자산성 물품 <개정 2023.9.27.>
3. 박물관에서 구매하는 박물관류
4. 경품, 상품권

## 제2장 물품의 구매 절차

**제5조(구매요청)** 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 부서에서 배정된 예산의 가용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물품매입품의서를 작성(규격서, 카탈로그, 도면, 견본 및 참고자료 첨부)하여 구매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매입품의서를 구매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이나 업무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구매수량 또는 물량 등을 분할하여 구매(요청)할 수 없다.

③ 입찰공고 기간 등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방법)** 구매 부서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매방법(경쟁입찰, 수의계약, 단가계약 등)을 검토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1. 물가조사
  - 가. 직접조사방법: 직접 시장가격 조사
  - 나. 간접조사방법

- (1) 가격표, 카탈로그에 의한 조사
- (2) 공인기관 발행 월보에 의한 조사
- (3) 거래 실적 가격

2. 원가 계산: 구매부서에서 긴급품목, 희귀품목,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첨부이 불가능하거나 타 방법에 의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및 물가표를 첨부하여 견적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물품검수)** ① 납품된 물품은 「물품검수 규정」에 따라 검수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과정 중에도 중간검수를 행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지급)** 물품의 검수 및 등제가 완료되면 구매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선급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이거나, 계약의 특성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물품 제조 계약에만 해당)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경쟁입찰)**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되어야 할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경우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소액 구매는 1인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견적서는 업체로부터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⑤ 견적서 제출 공고 기간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단가계약)** 구매 부서는 반복 구매 품목의 수시구매에 있어 신속, 가격 안정,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장 입찰

**제14조(입찰공고)** 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본교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물품 규격 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 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규격 설명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물품에 대한 설명과 입찰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규격 설명회를 할 수 있다.

② 물품규격 설명회는 수요 부서 또는 구매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물품규격 설명회의 조서는 참가자의 기

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물품규격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참가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6. 납세완납증명서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 ① 경쟁입찰 참가자는 소정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밀봉한 상태로 접수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9조(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총무처장이 경쟁입찰에 붙일 물품의 가격을 해당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이를 사전에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20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입찰은 계약담당자 및 수요 부서 담당자와 입찰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1회 투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3회까지 재투찰을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교 예정가격과 가장 근접한 입찰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협상으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제21조(재공고 입찰)**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②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장 계약의 체결

**제22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지체상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물품의 특성이나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2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기간은 그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별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 책임 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본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9. 27.>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